

유조선 및 위험화학품 산적운반선의 화물구역 내 연료유탱크 배치

■ 주요 개정 사항 요약

관련 규칙	시행 일정
지침 8편 방화 및 소화	2019년 7월 1일(승인 신청일 기준) 시행사항

■ 주요 개정 사항

○ 개정 사유

IACS UR M76(Rev.1, June 2018) 반영

○ 개정 사항

유조선 및 위험화학품 산적운반선에서 연료유탱크의 허용가능한 위치 및 배치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개정됨.

- 인화점 60 °C미만의 액체 화물 및/또는 독성 액체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명확화

- 화물탱크 뿐만 아니라 슬롭탱크와 공통의 경계를 갖는 연료유탱크는 화물탱크 블록 내에 위치하거나 연료유탱크의 일부를 배치시켜서는 안 됨.

- 이 항의 목적상 독성 액체화물은 지침 7편 6장 부록 7B-1의 'k'란에서 독성 증기가 발생하는 물질을 포함

○ 영향 분석

✓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
: 연료유탱크 배치 요건의 명확화로 인한 안전성 증가

✓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
: 해당 사항 없음.